

하동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2. 25.

하동군의회의장 강 대 선

1. **조례명:** 하동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 1) 팩스: 055-880-2939
- 2) 하동군의회 홈페이지(<http://www.hdcl.go.kr>) 참여마당(의회에 바란다)
- 3) e-mail: jina927@korea.kr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 명: 하동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조항)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 점검) ①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확인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계 기관 종사자 등에게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